

科學院古典研究室編

李朝實錄分類集

第一輯 政策 1

科學院出版社

李朝實錄分類集 第一 政策一

一九六〇년 七月 一五일 인쇄
 一九六〇년 七月 三〇일 발행

분류
 편찬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고전연구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행자

과학원출판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서 문

조선로동당 제삼차 대회는 과거 우리나라 과학 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며 일체 과학연구 자료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장래에 찬란하고 건전한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을 사회 과학 일꾼들 앞에 제기된 중요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과학원 고전 연구실은 당이 제시한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실천에 옮기는 제 일보로 리조실록의 분류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동안 담당 일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일기만 한 전체 근로자들의 양양된 기세에 고무되면서 꾸준히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오늘에 와서 『리조실록 분류집』 첫 분책의 출판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오로지 승리로 일관된 빛난 전통을 가진 우리 당의 정확한 과학 문화 정책에 의하여 서단 생취할 수 있는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사업에서 한개 중요한 주추들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리조실록은 우리 나라에서 一三九二년 리씨 왕조의 창건 초부터 一八六三년까지 二五개 왕대 四七二년간에 걸쳐 왕대가 교체될 때마다 매개 왕대를 단위로 삼아 일정한 양식으로 편찬해 온 년대기이다.

리조 실록의 총 분량은 일제 시대에 편찬된 리조의 말대 왕들인 고종(高宗), 순종(純宗) 두 왕대의 실록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전부 一八九三권 八八八책에 달하는 방대한 문헌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록 형식의 역사 서적을 편찬한 것은 벌써 一〇세기 고려 왕조의 창건 초부터 실시해 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리조 봉건 국가는 이 제도를 계승하여 왕조 창건 이래 다섯 세기 동안에 『일기』로 불리우는 폐왕(廢王)들의 실록과 함께 일부 왕대에서 추가로 편찬한 수정 실록들까지 합하여 전후 二九차에 걸쳐 항례적인 국가 사업으로 왕조 실록을 편찬해 왔다.

리조 실록의 내용은 응당 봉건 지배 계급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편찬된 기록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볼 때에 이 문헌은 편찬자들의 의도와는 관계할 바 없이 해당 기간을 통하여 조선 인민이 겪어 온 사회 정세 및 정치 생활에 관한 자료들을 방대한 기록으로 남겨 주고 있다. 바로 이 점은 오늘 우리가 가진 리조 실록의 사료적 가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평가의 토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리조 실록이 가진 사료적 특징은 우리나라 봉건 사회에 있어서 그 구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계급을 비롯하여 복잡한 신분층으로 구성된 피지배 계급 대중의 정치 경제 생활에 관한 생생한 자료들을 그 어느 문헌보다도 가장 예리하게 또 집중적으로 반영한 데 있다.

누구나 리조 실록을 통독할 때는 봉건 착취 제도의 기본 대상으로 되는 인민 대중의 끝없이 처참한 생활 기록이 다섯 세기 동안의 실록 기사를 종단하는 굵은 줄거리가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봉건 국가의 토지 제도, 부세(賦稅) 제도, 요역(徭役) 및 군역(軍役) 제도, 노비(奴婢) 제도, 신분 제도, 관제(官制), 법제(法制), 재정(財政), 화폐 제도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사항 하나를 설명하는 기사에서도 직접적으로 피지배 계급 대중에 대한 압박 및 착취 관계와 함께 그들의 영용한 투쟁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었고 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자료들은 리조 실록이 가진 다른 특징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실록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기사들이 봉건 국가가 평소 자기 활동에 필요한 별개의 목적에서 작성한 허다한 자료 문진들로써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즉 필요한 사건을 소개하기 위하여서는 적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 문진을 소재(素材) 그대로 대치하는 실록 편찬의 기본 방침이 오늘에 와서 이 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일반적으로 편찬자의 손에서 세심히 재단(裁斷)되고 윤색(潤色)된 각종 체례의 봉건 시대 역사 서적들과는 엄연히 구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조 실록이 대상으로 한 자료의 범위는 실로 광범하다. 이것은 단순히 이 문헌의 양이 방대하다는 점과는 엄격히 구별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리조 실록 자료는 해당 시기 봉건 사회가 가진 사상, 신앙, 문리, 도덕에 기준한 자기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여기서는 소위 천변 지이(天變地異)에 속하는 일체 자연 현상들과 함께 사소한 시정 잡문(市井雜聞)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무시할 수 없는 『사건』으로 되어 자기의 대상 자료로 포괄하고 있다. 이리하여 리조 실록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등에 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천문, 기상, 지리, 박물 등 과학 기술 일반에 관한 상세한 자료와 아울러 민속, 생활, 사상,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야말로 백과사전(百科事典)적인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리조 실록은 이와 같이 현존 우리나라 고전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고 귀중한 사료의 보고(寶庫)로 되어 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 과학 및 여러 부문 과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허다한 중요 문제들의 해결과 아울러 우리나라 민족 문화 일반의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 사업도 이 실록 자료의 과학적 리용과 분리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리조 실록 전편을 보다 손쉽게 과학적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사료학적으로 정리하는 문제는 우리 학계의 숙망으로 되어 온 것이 미오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리조 실록은 그 간행의 당초 목적부터 일반의 열람이나 연구용으로 삼기 위하여 정리한 역사 서적이 아니다. 그것은 봉건 왕조가 자기의 역사를 후대의 『구감』으로 삼기 위하여 길이 보존하겠다는 목적에서 간행한 방대한 년대기의 두적임에 불과하다.

오늘에 와서 이같은 체제로 된 역사 고전들의 사료적 리용은 극히 곤란하고 불편할 뿐더러 심한 경우는 일반적 방법에 의하여는 그 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리조 실록과 같이 그 류례가 드물게량이 방대한 서적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리조 실록은 언제 어떤 임의의 사건이 있었다는 체제로만 편찬 되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어디 실렸는가를 찾기 위하여서는 실록 전편의 열람을 요하는 체제로 되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리용자들을 위한 실록 원본의 보장 문제는 단순히 복각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한 절음 나아가서 실록 기사 전문을 현대 과학 연구 체계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별 시일 순으로 분류 정리된 자료집의 형식으로 출판해야 할 구체적 과업이 제기된 것이다.

과학원 고전 연구실은 그간 학계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분류 요강을 준비한 기초 위에서 우

선 四七 개의 분류 과목(앞으로 충감을 예견한다)을 설정하고 리조 실록을 전면적으로 추조 분류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리조 실록 전문을 축조로 一 건 一 회 분류의 원칙에서 四〇 여 개 과목 별로 분류하기보다 배분한다는 문제는 어느 지점된 한 개 과목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적당히 발취하여 일반적인 단일 과목의 자료집을 편찬하는 문제와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성질을 달리하였다. 실록 분류 사업에서 이같은 기본 원칙의 적용은 많은 경우 기사의 본말이 저절로 정리되는 한 편 무엇보다 실록 기사의 전모를 확보함으로써 자료집으로서의 과학성을 보다 제고하며 내용을 훨씬 풍부화할 수 있었으나 이 반면에는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의 파생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로 실록의 원문이 가지는 고유 조건과 자료집이 요구하는 필요 조건과 아울러 一 건 一 회 분류의 원칙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위에서 분류 과목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둘째로 실록 기사가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벗어난 가다익 많고도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항들을 제약된 과목 내에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문제, 셋째로 여기서 一 건으로 부르는 분류 대상 기사의 단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아울러 한 개 단위 기사가 두 개 이상되는 과목의 적용을 요하는 단위 기사 성격의 二 중성에 대한 처리문제, 넷째로 매개 단위 기사에서 분류의 정표로 되는 해당 사건 또는 사항의 본질과 현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 다섯째로 동일 사건이라 도 기사의 단위에 따라 본질상 두 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 처리될 경우에 해당 사건의 본말을 수습하는 문제, 여섯째로 기사의 분류 효과와 철저히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매개 색인 사항 추출에서 정확한 기준의 적용 문제 등등

이다.

이같은 문제들 이외에도 부대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서는 허다한 난관과 애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사업을 담당할 고전 연구실은 당의 일상적인 지도를 받들고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에 기초한 집체적 연구와 아울러 각 부문 전문 학자들의 동지적 방조에 의하여 같은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진행한 결과 이미 한 분책 분량 이상으로 분류 정리된 몇 개 과목 중에서 먼저 『정책』편 첫 부분부터 제 一 집체 一 분책으로 출판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각 과목 별로 원고의 정리 순위에 따라 해당 분책 별로 출판하게 될 것이다.

이 『정책』편은 실록 자료 중에서도 해당 시기의 국가 정책에 관한 기사들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특징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에 해당되는 기사들이 한 개 단위 기사에 종합된 상소(上疏)와 장계(狀啓) 교서(敎書)류에 속하는 기사들이다.

이 기사들은 리조 봉건 사회의 전 기간을 통하여 매개력사적 단계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걸쳐 그 동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 과목 별로 분해하여 처리하지 않고 일반 과목을 설정한 범주와는 달리 『정책』이란 과목을 설정하여 종합하였다.

이 기사들은 실록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을 형성하여 각종 과목별 분류집의 종론적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이므로 실록 자료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전문 연구 과목의 여하를 불구하고 공통적이요 필수적인 연구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 『리조 실록 분류집』은 앞으로 대략 七〇여 분책으로 나누어 출판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 첫 분책의 출판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량에 비하면 겨우 그 첫 걸음을 옮겨 놓은 데

불과하다. 이 사업은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들고, 백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말로 조선로동당의 평도에 의하여 조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주의 시대가 아니고는 좀처럼 받기조차 하기도 어려운 거대한 문화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업을 생각할 때에 담당 일꾼들의 책임은 더한층 무거워짐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업에서 앞으로의 좋은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친절한 지적과 비판을 기대한다.

一九六〇년 五월 일

과학원 고전 연구실

通卷 凡例

一、本書는 李朝實錄 記事全篇을 對象으로 삼아 이를 다음과 같이 四十餘個 科目으로 分類하고 每 科目을 分冊의 篇目으로 삼아 該當 記事를 年代順次로 編纂하였다.

- | | | | | | | | | | | |
|-------|---------|-------|--------|--------|--------|---------|----------|------------|-------|-------|
| 1 政策 | 2 官制 | 3 法制 | 4 軍事 | 5 農民暴動 | 6 政爭政變 | 7 人事 | 8 身分 | 9 奴婢 | 10 女眞 | 11 中國 |
| 12 日本 | 13 南方 | 14 西歐 | 15 田制 | 16 稅制 | 17 公私債 | 18 賑恤 | 19 戶口 | 20 徭役 | 21 貨幣 | 22 財政 |
| 23 農林 | 24 畜產 | 25 水產 | 26 礦業 | 27 土木 | 28 交易 | 29 運輸倉庫 | 30 交通 | 31 技術(手工業) | 32 教育 | 33 保健 |
| 34 出版 | 35 天文氣象 | 36 地理 | 37 動植物 | 38 語文 | 39 美術 | 40 音樂 | 41 思想及信仰 | 42 說話 | 43 倫理 | 44 風俗 |
| 45 儀禮 | 46 王室 | | | | | | | | | |

二、前項 分類科目을 設定함에 있어서 다음의 몇가지 點을 考慮하였다.

1 科目의 名稱은 可能的 範圍에서 該當 現代用語를 使用함으로써 分類의 基準이 될 概念을 科學化함에 留意하였다.

2 科目의 設定基準은 粗細 兩偏向을 避하기에 努力하면서 資料利用에 便宜한 中心線을 目標로 하고 될 수 있는대로 各科目이 가지는 範圍의 等位性을 考慮하였다.

3 科目에 따라서는 該當되는 資料의 範圍가 매우 狹小하다도 그 性格이 研究資料로서 獨自의

位置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部門은 이를 獨立科目으로 設定하였으며 現代科學의 研究體系에서當然히 獨立科目으로 設定되어야 할 部門이라도 實錄記事의 條件과 利用上 便宜點을 考慮하여 이를 억지로 分離하지 않고 隣接科目에 併合處理한 境遇도 있다.

4 分類事業의 進行과 함께 必要한 科目의 增設도 豫見한다.

二、記事의 分類과 編成方式은 다음과 같다.

1 分類記事의 標準單位는 實錄原文의 編成單位로 된 ○記號로 區劃한 記事一節로 하였다. 但日順位로 連結된 同一事件의 記事는 數件一括하여 한 개 單位記事로 處理한 境遇도 있다.

5 모든 記事는 一件一回의 分類原則에 立脚되 한 개의 單位記事가 두 가지 以上の 科目에 二重的으로 該當하는 內容을 가졌을 境遇는 그중 支配的意義를 가지는 科目을 基本科目으로 定하여 類聚하는 篇目으로 삼았으며 副次的意義를 가지는 科目은 이를 補充科目으로 삼아 該當記事의 書頭に 表示하였다.

3 編成된 每個記事의 머리에는 그 記事의 唯一番號를 매겼으며 末尾에는 抄出原本에 依한 王代卷數 葉數 表裏別과 該當 年月日(干支)을 括弧內에 補記하였다.

4 記事에서 日字를 表示하는 干支가 없이 『是月』이나 『是歲』로 表示한 記事는 그대로 該當科目 該當年月의 末尾에 끼웠으며 또 時日表示가 不分明한 太祖卽位前記事는 年次 또는 月順으로 處理하였다.

5 每篇의 補充科目은 이를 科目別로 整理하여 附索引表를 附錄으로 篇末에 붙였다.

一、以上の規定科目에 依한 記事의 分類方法만으로는 利用者의 要求를 圓滿히 充足시키기 어려운 데 비추어 여기에는 다시 每個記事別로 一定한 基準에 依한 索引事項을 抄出하여 該當記事의 書頭에 表記하고 卷末에 附錄으로 音順索引表를 붙였다.

一、索引事項은 主로 原文에 있는 事彙나 成語나 名詞單語들의 抄出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原文記事에서 한개 事件이나 事項을 表徵할 만한 單語가 없을 境遇에는 適宜한 件名을 設定한 境遇도 있다.

一、書頭에 表示된 補充科目 名稱과 索引事項은 活字의 大(補充科目) 小(一般索引)로 區別한다.
一、每個記事 末尾에 陰曆으로 表示한 時日 干支를 陽曆으로 쉽게 換算하기 爲하여 陰陽曆對照朔日表를 附錄으로 붙였다.

一、原文에서 發見되는 的確한 誤字 缺字들은 이를 校勘補訂하는 同時에 校勘表를 作成하여 各輯末에 붙인다. 但 商商 豐豐 易易等 字學上 全然 異字임에도 不拘하고 書寫上 慣用된 誤字들은 이를 本文에서만 訂正하였고 校勘表에서는 밝히지 않았다.

一、本書의 刊行順位는 編輯事情에 따라 반드시 分冊順位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政策篇 凡例

一、分類要綱대로 規定한 單位記事들 中에 그 內容이나 形式에 있어서 特徵的인 共通性을 가지고 實錄記事에서 한개 重要한 系列을 이루고 있는 一部 上疏狀啓 敎書類의 記事들은 많은境遇 李朝封建社會의 全期間을 통하여 每歷史的時期的 政治經濟社會文化思想外交軍事等에 關한 動向을 綜合的으로 또는 系統的으로 反映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一般 分類科目에 依하여 分解 處理하지 않고 本篇의 『政策』이란 科目을 設定하여 綜合收錄하였다.

二、本篇에 收錄한 記事들은 다음과 같은 種類들이다.

1 議政府를 中心한 中央各機關들의 名義 혹은 該當 代表的責任官吏 또는 學者 儒生 個人的 名義로 上書 上疏等 節次에 依하여 國王에게 提出된 重要時事問題一般에 關한 政治改善對策으로서의 時務策을 비롯한 諸般 求言對策 各種事宜 禁法條例 論事條陳等 形式으로 된 綜合的인 政策 政見

2 狀啓를 中心한 啓本 啓目의 形式으로 中央에 提出한 地方機關의 責任官吏、혹은 中央으로부터 差遣한 使臣들의 名義로 建議된 國策的意義를 가지는 地方行政對策

3 司憲府 司諫院等の 諫官들 또는 其他個人的 名義로 된 國王의 政務處理에 對한 批判言論

로서 政策理論에 屬하는 記事

4 國王을 中心한 朝啓 朝參 常參 輪對 또는 禮宴 經筵等의 機會에 國王과 高官들 間의 問答 또는 討論形式으로 進行되는 重要な 政見 政策 및 時事評論에 關한 記事

5 國王의 敎旨 諭書 傳旨 綸音 등 形式으로 發表되는 綜合的인 政綱 및 法規類.

二、前項의 各形式에 屬하는 記事로서 그 內容이 專一하여 例하면 法制 田制 稅制 軍事等 科目으로 處理될 수 있는 記事라 할지라도 그것이 歷史的 意義를 가지는 重要的 政策이라고 認定될 境遇에는 이를 本篇에 收錄하고 直接 該當되는 科目은 補充科目으로 表示한 境遇도 있다.

一、本篇은 太祖元年(一三九二)으로부터 世祖十三年(一四六八)까지의 該當記事를 收錄하였다.

一、本篇은 李朝封建社會 全期間을 通하여 施行되었거나 또는 論議된 諸般 重要政策의 變化 發展 過程을 손쉽게 了解할 수 있는 資料들을 綜合한 重要科目이므로 本李朝實錄分類集 分冊 順位에서 第一輯으로 하여 發刊한다.

李朝實錄分類集 第一

政策 一 目錄

太祖元年壬申 (一三九二)		(一)
太祖二年癸酉 (一三九三)		(一六)
太祖三年甲戌 (一三九四)		(一七)
太祖四年乙亥 (一三九五)		(一九)
太祖六年丁丑 (一三九七)		(二四)
太祖七年戊寅 (一三九八)		(二六)
定宗元年己卯 (一三九九)		(三四)
定宗二年庚辰 (一四〇〇)		(四三)
太宗元年辛巳 (一四〇一)		(四八)
太宗二年壬午 (一四〇二)		(六二)

太宗三年癸未 (一四〇三)		(六九)
太宗四年甲申 (一四〇四)		(八二)
太宗五年乙酉 (一四〇五)		(九三)
太宗六年丙戌 (一四〇六)		(九六)
太宗七年丁亥 (一四〇七)		(一〇一)
太宗八年戊子 (一四〇八)		(一一九)
太宗九年己丑 (一四〇九)		(一二四)
太宗一〇年庚寅 (一四一〇)		(一三九)
太宗一一年辛卯 (一四一一)		(一四七)
太宗一二年壬辰 (一四一二)		(一五四)
太宗一三年癸巳 (一四一三)		(一六一)
太宗一四年甲午 (一四一四)		(一七二)
太宗一五年乙未 (一四一五)		(一七八)
太宗一六年丙申 (一四一六)		(一九一)
太宗一七年丁酉 (一四一七)		(二〇一)
太宗一八年戊戌 (一四一八)		(二〇九)
世宗即位年戊戌 (一四一八)		(二一四)

世宗元年己亥（一四一九）		（二一八）
世宗二年庚子（一四二〇）		（二二二）
世宗三年辛丑（一四二一）		（二三一）
世宗四年壬寅（一四二二）		（二三二）
世宗五年癸卯（一四二三）		（二三三）
世宗六年甲辰（一四二四）		（二四一）
世宗七年乙巳（一四二五）		（二四二）
世宗八年丙午（一四二六）		（二四九）
世宗九年丁未（一四二七）		（二五九）
世宗一〇年己酉（一四二八）		（二六一）
世宗一一年庚戌（一四二九）		（二六二）
世宗一二年辛亥（一四三〇）		（二六七）
世宗一三年壬子（一四三一）		（二八一）
世宗一四年癸丑（一四三二）		（二八五）
世宗一五年甲寅（一四三三）		（二八九）
世宗一六年乙卯（一四三四）		（二九五）
世宗一七年丙辰（一四三五）		（二九九）
世宗一八年丁巳（一四三六）		（三〇一）